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목차

- I. 논의배경 및 사회·경제적 환경
- II. 여성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
- III. 해외의 여성관련 연금정책 사례
- IV. 여성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I. 논의배경 및 사회·경제적 환경

1. 논의배경 : 고령사회 도래와 여성 노인 증가
2. 사회적 환경 : 고령화
3. 경제적 환경 :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1. 논의배경 : 고령사회 도래와 여성 노인 증가

-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
 - 고령사회 도달기간 17년(7% → 14%), 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9년 (14% → 20%)
 - 주요국 고령사회·초고령사회 도달기간 : 일본(24년, 12년), 독일(40년, 37년), 미국(73년, 21년)
- 고령화 과정에서 고령 독신여성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
 - 여성의 기대수명은 남성보다 6.2세 많음(여 85.2세, 남 79.0세), 결혼연령격차는 약 3~5세
 - 이를 고려하면 노후에 홀로 남게 되는 여성(고령 독신 여성)의 생존기간은 약 10년
- 일반적으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소득수준, 노후준비 부족 등으로 노후빈곤 가능성이 높음
 - 퇴직 후 연금소득 등 안정적 노후소득원 확보를 통한 여성의 노후소득 강화가 필요
- 여성의 노후준비실태, 국내외 여성관련 연금정책 특징을 기초로 사적연금*의 정책방향 제시
 - *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으로 사적연금에 초점을 두는 이유
 - 공적부문 : 재정문제 직면, 추가 복지제도 도입 시 불가역성의 프레임에 직면할 수 있어 탄력적 제도운영 어려움
 - 사적부문 : 사적연금에 대한 정책지원이 비용 효과적이라는 다수의 연구결과 존재

2. 사회적 환경 : 고령화

• 60세 이후 고령기에 여성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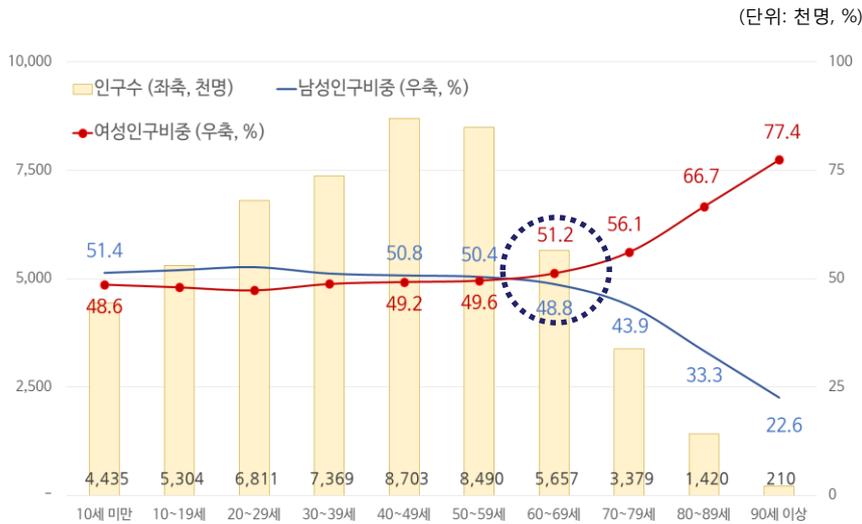
- 전체 인구(5천 200만 명) 중에서 남성과 여성의 비중은 거의 동일하나, 40세 이후 여성 비중이 증가 시작

• 전세계적으로도 여성의 기대여명이 남성보다 길어 고연령화 될수록 노인여성인구 증가

- OECD 국가에 비해 우리나라 노인의 성별 기대여명 격차*는 더 큼 (초고령 여성 더 많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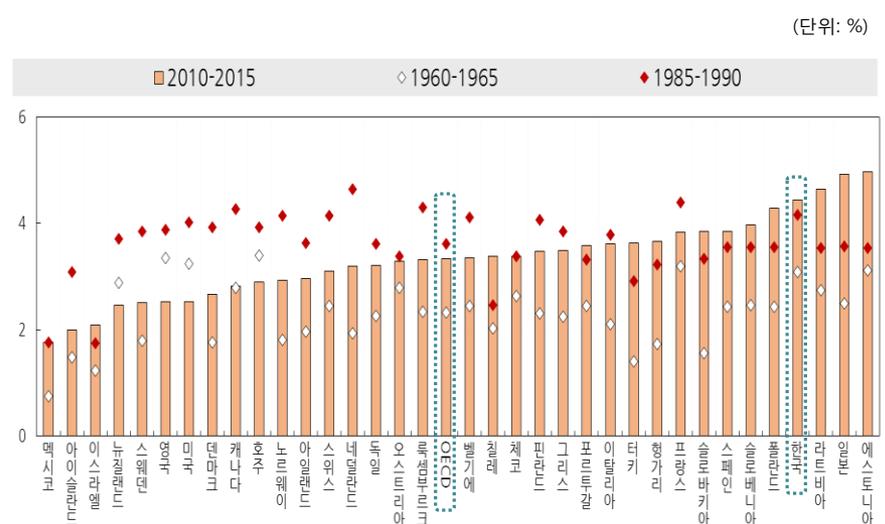
* 2010~2015년 기준, 노인의 성별 기대여명격차 : OECD 평균(3.2년) < 우리나라 (4.3년)

연령대별 성별 인구 현황 (2017년)



자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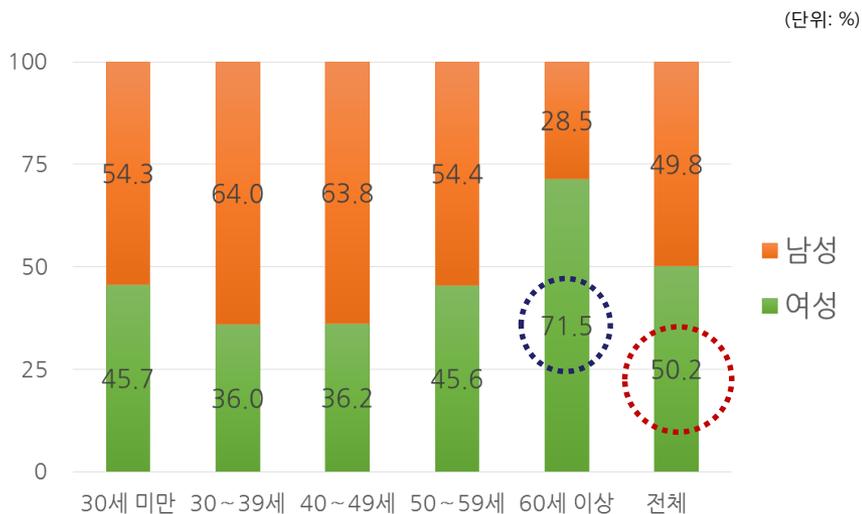
기대여명 성별 격차 (65세 시점)



2. 사회적 환경 : 고령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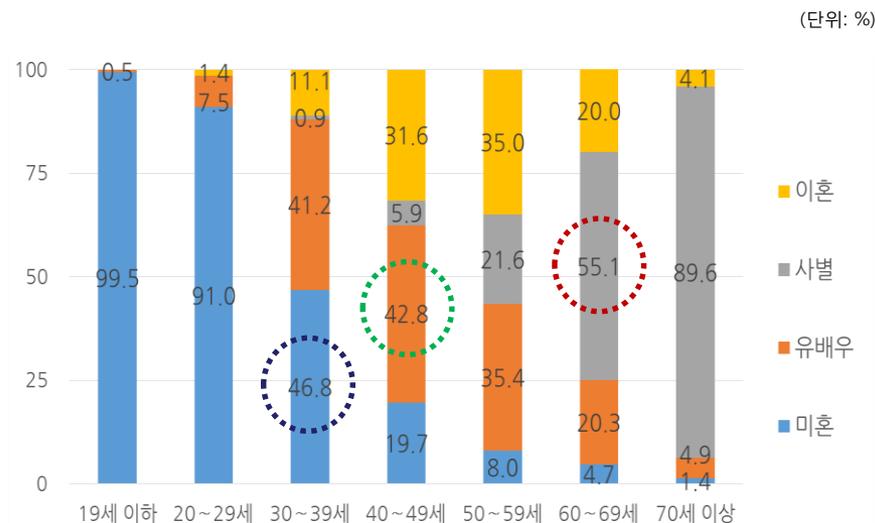
- 60세 이상 1인 고령자 가구 중 여성 가구주의 비중은 71.5%로 남성에 비해 높음
 - 전체 1인 가구(520만) 중 여성 1인 가구 비중은 50.2% * 전체가구 중 여성가구주 비중: 30.3%(2017년)
 - 여성 1인 가구와 여성 가구주가 많아지는 주요 원인으로 사별 혹은 이혼
 -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는 미혼인 경우, 40~50대 배우자가 있는 경우, 60대 이상 사별한 경우의 비중 높음
- 여성의 장수화로 독거노인 여성의 증가 예상

연령대별 성별 1인 가구 현황 (2015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6.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혼인상태별 여성 가구주 비중 (2017년)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6.2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 경제적 환경 : ①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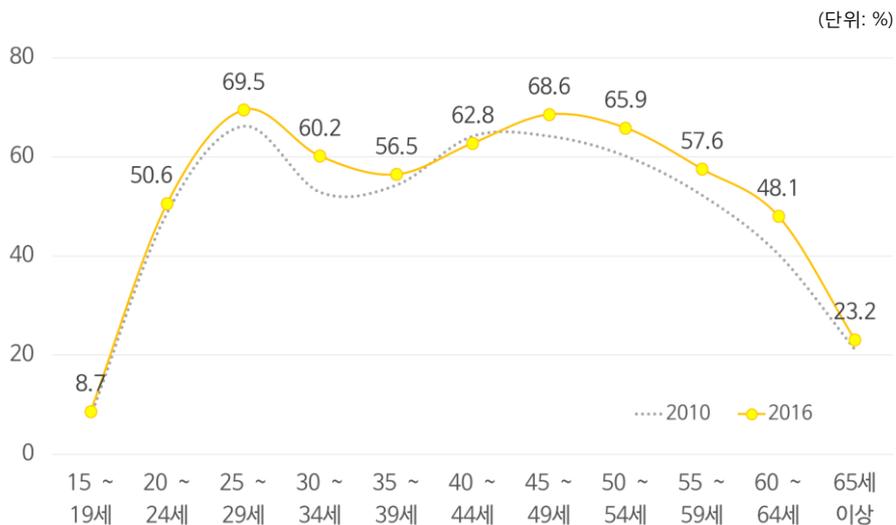
• (고용률) 여성고용률은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30대 후반에 낮았다가 다시 증가하는 **M자형** 특성

* 55~64세 인구 중 **가장 오래 근무하였던** 일자리의 근속기간 : 여성 11년 2.5개월, 남성 19년 3.7개월

• (경제활동률) OECD 35개국 대상 여성 경제활동률과 성별 격차는 각각 54.5%, 13.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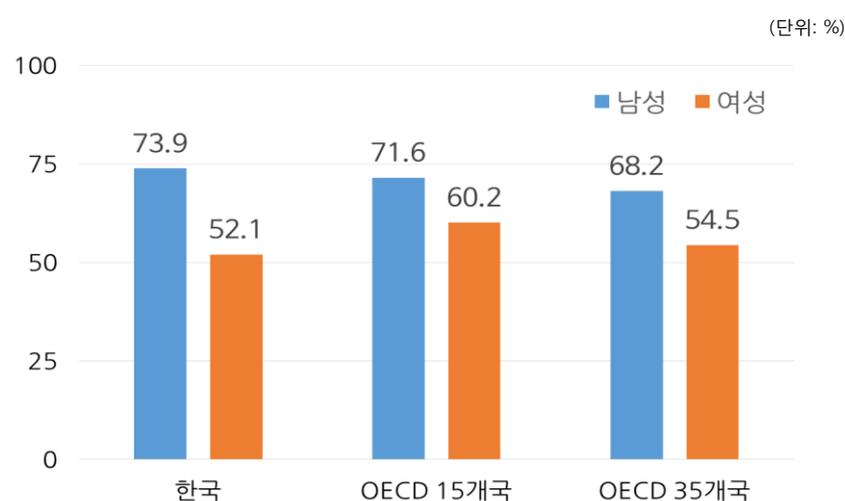
- 선진국의 여성 경제활동률은 우리나라보다 양호하고, 성별 격차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



자료: 경제활동인구연보; 통계청 보도자료(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OECD 국가의 성별 경제활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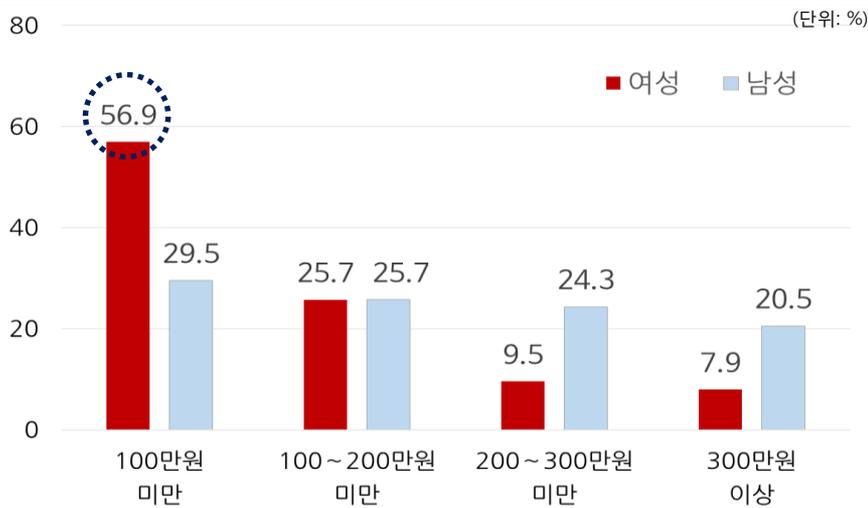


주: 15세 이상 대상(미국은 16세이상), 각 국가의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s)
 자료: 통계청(2018), 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http://kosis.kr>)

3. 경제적 환경 : ② 경제상황 -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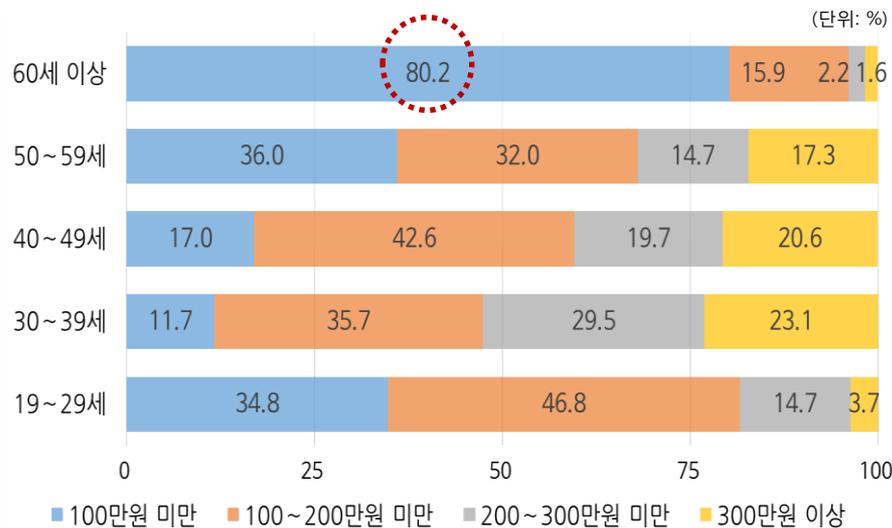
- (가구소득) 여성 1인 가구 월평균소득은 **56.9%**가 **100만원 미만**으로 남성(29.5%) 보다 1.9배 높음
- 50세 이후부터 100만원 미만 저소득자 규모가 많아져, **60세 이후에는 80.2%**가 100만원 미만 소득

1인 가구 소득 (2016년 기준)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보도자료(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연령대별 여성 1인 가구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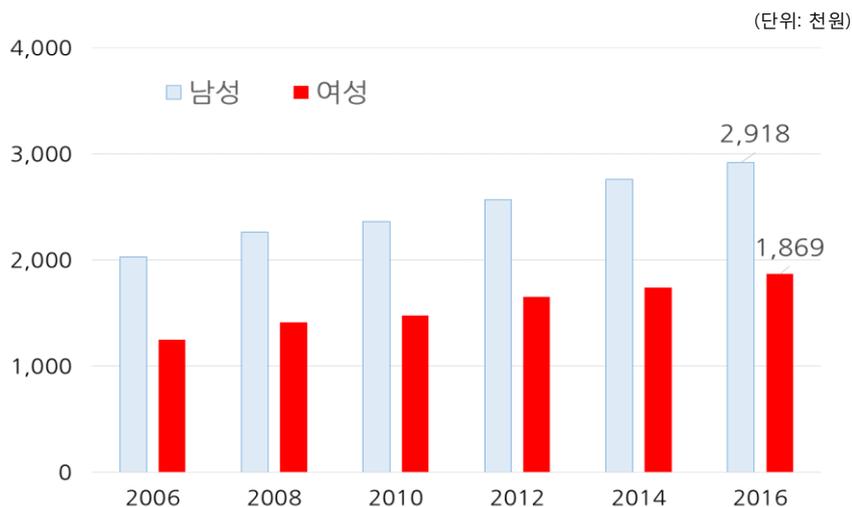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보도자료(2017), 2017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3. 경제적 환경 : ② 경제상황 - 임금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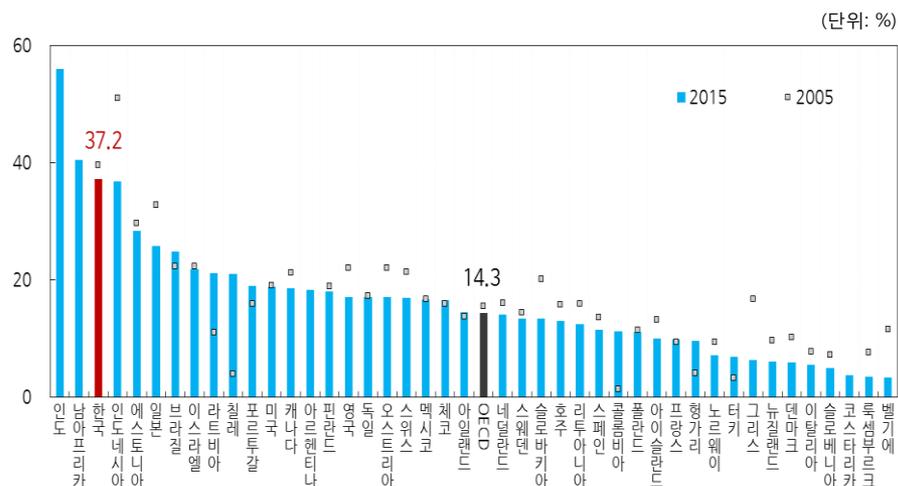
- (임금수준) 2016년 개인 기준 우리나라 여성의 월평균 임금은 186만 9천원으로 **남성의 64.1% 수준**
 - 시간당 임금수준도 1만 1,507원으로 남성의 68.4% 수준
- (임금격차) 2015년 이후 OECD 국가의 성별 임금격차는 평균 14.3%
 -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이 격차가 낮으며, 우리나라의 격차는 37.2%로 인도, 남아프리카에 이어 세 번째
 - 선진국 노동시장에서의 다양한 정책 지원 등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는 감소 추세

우리나라 성별 임금수준 비교



주: 임금근로자 1인 이상 규모 사업체 대상,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 통계청(2017), 2017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성별 임금격차 (2015년 이후)



주: 성별 임금 격차=(남성 월임금 중위수-여성 월임금 중위수)/남성 월임금 중위수 자료: OECD (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3. 경제적 환경 : ② 경제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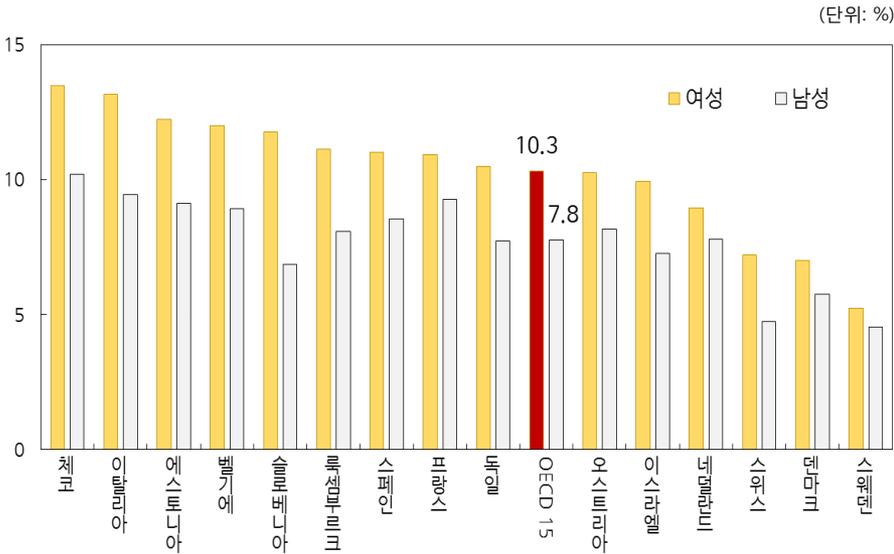
• (임금격차 발생 원인) 비공식업무 및 비급여 노동시간 등

- 비공식업무의 56.2%를 여성이 담당 (OECD 15개국 기준: 여성 10%, 남성 7.8%)

- 여성은 급여보다 비급여의 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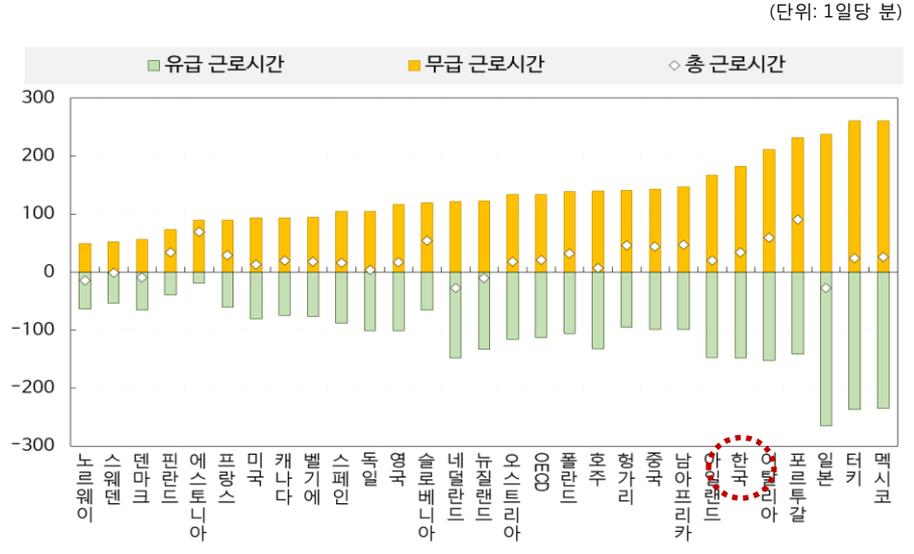
* 여성은 주로 저소득 직군에 종사하고, 유급근로자 규모(대상 여성의 56.2%)도 남성에 비해 20%p 낮음(OECD, 2016)

일상의 비공식 업무수행의 성별 격차 (50세 이상)



자료: OECD (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급여 및 비급여 노동을 고려한 여성의 노동시간



자료: OECD (2017), The Pursuit of Gender Equality

3. 경제적 환경 : ③ 노후준비 및 연금가입

• (노후준비) 노후준비 방법, 연금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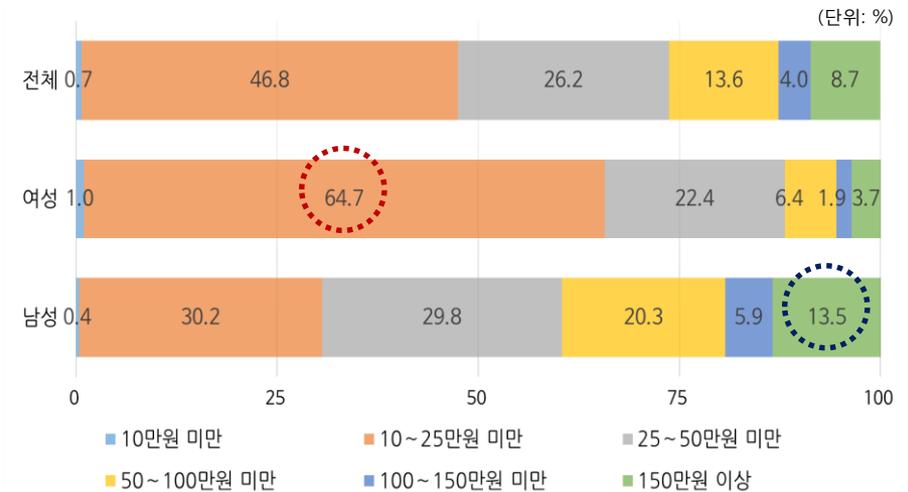
- (노후준비여부) 고령자 1인 가구 중 노후준비 가구는 여성(30.2%)이 남성(42.4%)보다 12.2%p 적음
- (연금수령) 연금수령 비율은 여성 41.3% (남성 49.6%)
- * 55~79세의 월연금수령액(공사연금 합산)은 여성 34만원(남성대비 49.3%), 남성 69만원
- (연금액 분포) 남성은 150만원 이상 고연금층이 13.5%이고 연금소득수준도 고른 분포를 보이는 반면, 여성은 10~25만원 미만이 64.7%로 저연금에 편중

고령자(55~79세)의 연금수령 현황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7.11.29),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부가항목 보도자료

고령자(55~79세)의 금액대별 연금수령 현황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및 고령층 부가조사

3. 경제적 환경 : ③ 노후준비 및 연금가입

- (연금유형별 수령현황) 독립적 연금수급권인 노령연금의 수급 구성비는 남성(67%), 여성(33%)
 - (여성관련 공적연금) 분할연금 88.6%, 유족연금 92.6%가 여성이 수급(2018년)
 - * 부양가족연금은 87.4%가 여성이 수급하나 급여수준(월 2만원 대)이 낮아 노후소득보장 기능 미비
 - (여성관련 사적연금) 전업주부(비경제활동자)는 현업여성(경제활동자)에 비해 **개인연금 가입수준과 가입의향이 모두 낮음** (현업여성 41.8% vs. 전업주부 35.2%)

고령자(55~79세)의 연금수령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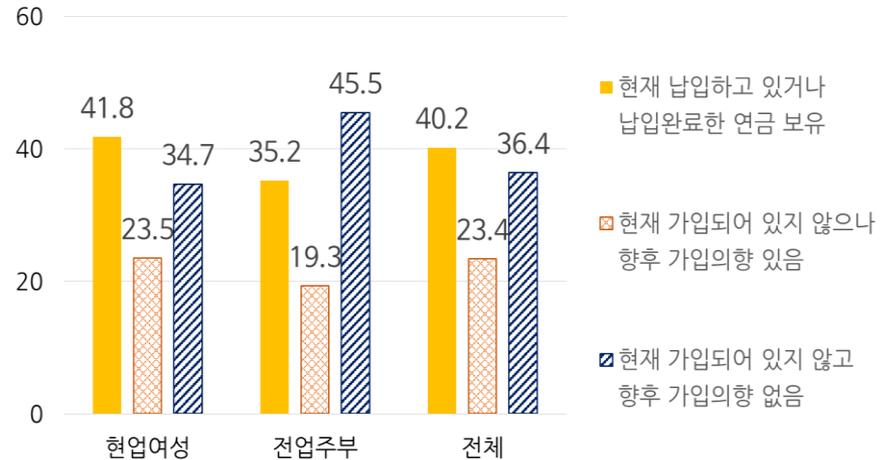
(단위: 천명, %)

구분		전체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인원	비중					
노령연금	남성	2,438	67.0	757	722	534	325	100
	여성	1,199	33.0	382	323	254	173	68
분할연금	남성	3	11.4	1	1	1	0	0
	여성	23	88.6	12	8	3	1	0
유족연금	남성	37	7.4	5	6	7	8	10
	여성	463	92.6	102	116	108	91	46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홈페이지, 2018년 1월말 기준 국민연금통계

여성의 개인연금 가입여부 및 향후 가입의향

(단위: %)



자료: 삼성생명 은퇴연구소(2016), 전업주부들의 노후준비 실태

3. 경제적 환경 : ④ 노인빈곤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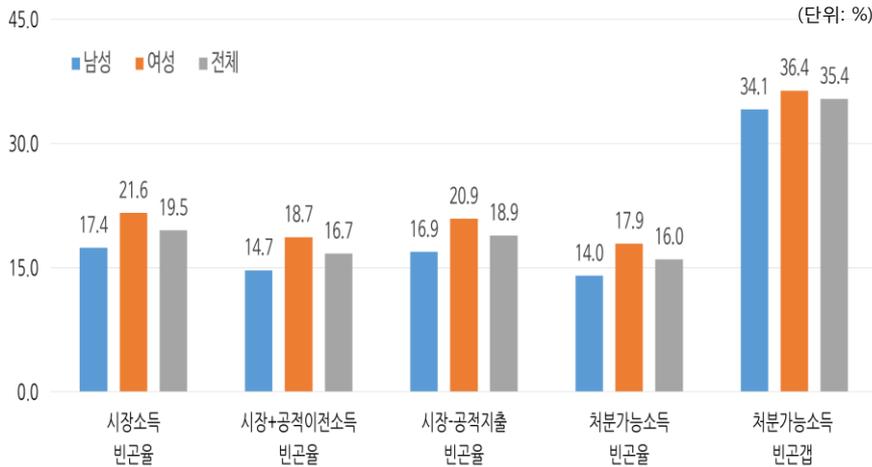
• (여성노인의 빈곤화) 남성에 비해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높음

- 시장소득기준 여성 가구주의 (상대)빈곤율은 21.6%(전체 14.7%)로, 남성(17.4%)에 비해 4.2%p 높음
- * 노인빈곤율이 46.5%인 점을 고려할 경우 **노인 여성의 빈곤율은 50% 이상일** 것으로 추정

• 해외 주요국의 경우 성별 경제적 격차는 연금격차 등을 통해 성별 노인 빈곤 격차로 이어지고 있음

- EU 28개국의 노인여성 빈곤율은 15.8%로 노인남성 대비 4.6%p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성별 빈곤율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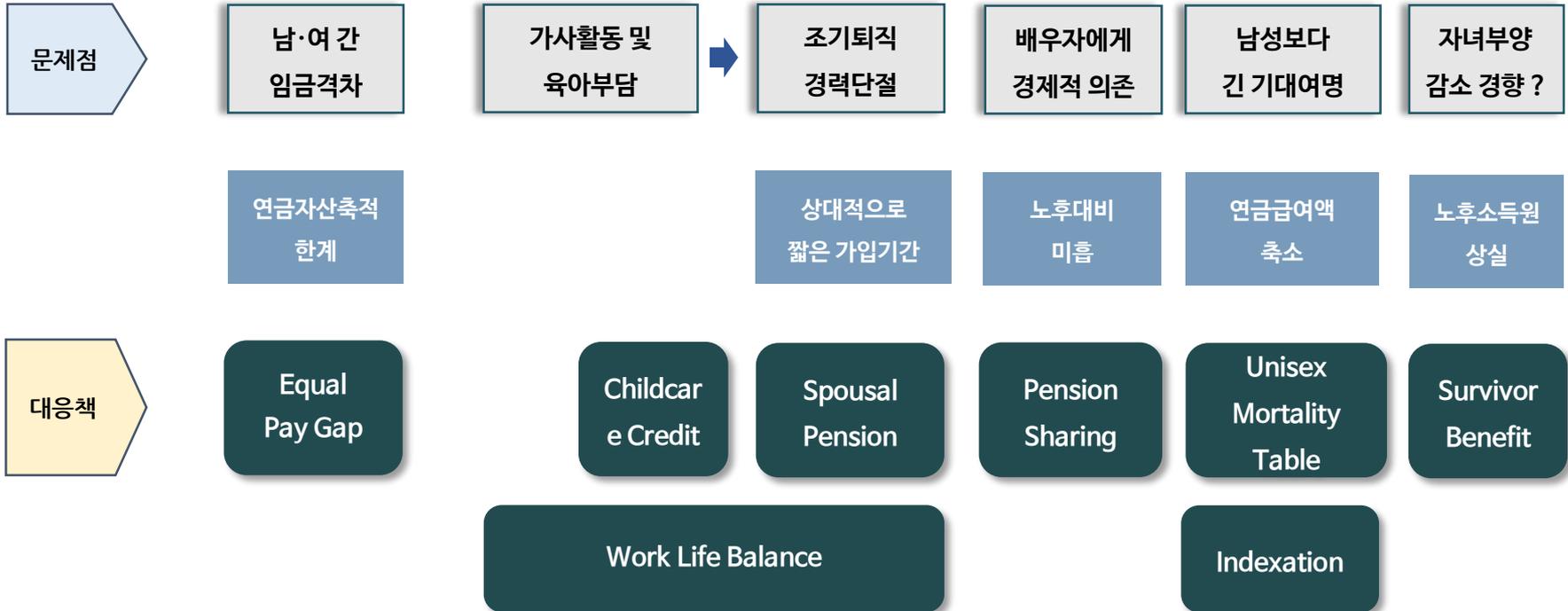
주: 1) 시장소득: 근로·자영·임대소득 등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생활보장수급액 등, 3) 공적지출: 사회보험료 등, 4) 처분가능소득: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세금
5) 빈곤갭: 빈곤선과 자신의 소득(빈곤층 대상) 간의 갭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 원시자료

65세 이상 노인 성별 빈곤율 (2013년 소득 기준)

국가	전체 (%)	남성 (%)			여성 (%)		
		독신	동거	소계	독신	동거	소계
벨기에	16.1	17.2	15.1	15.5	18.1	15.3	16.5
독일	16.3	23.0	11.0	14.0	29.5	10.9	18.4
프랑스	8.6	9.1	6.5	7.1	14.4	5.4	9.6
이탈리아	14.2	15.1	10.0	11.0	25.5	10.7	16.6
네덜란드	5.9	3.6	5.2	4.9	8.8	5.4	6.8
스웨덴	16.5	25.5	5.5	10.3	38.3	6.6	21.7
영국	17.9	17.6	13.9	14.7	29.3	14.6	20.6
EU 28개국	13.8	16.3	9.9	11.2	23.1	10.9	15.8

자료: EC 홈페이지, At Risk of Poverty Rates by Age

[참고] 여성의 생애기간 흐름도



II. 여성관련 연금정책 현황 및 평가

1. 여성관련 연금정책 현황
2.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

1. 여성관련 연금정책 현황 - 공적연금

- 공적연금에서 여성관련 연금제도로는 부양가족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출산크레딧이 존재
 - (① 부양가족연금) 수급권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양가족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
 - (②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사망과 가입이력에 따라 급여수준(기본연금액의 40~60%) 결정
 - (③ 분할연금)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부부에게 노령연금을 분할
 - * 황혼이혼 증가로 분할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혼인기간 5년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율(22.9%)도 상당
 - (④ 출산크레딧)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 제약으로 연금수급권이 제약된 만큼 보상

국민연금제도에서 여성관련 연금 유형

부양가족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자녀, 고령부모에 대해 가입자의 노령연금 수급 시 부가적으로 지급
유족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40~60% 지급
분할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연금 가입자의 배우자였던 자(5년 이상 혼인기간)가 이혼 시 노령연금의 50%지급
출산크레딧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자녀 이상 출산하는 경우 18개월 ~ 50개월의 가입기간 인정

여성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현황

(단위: 천명, %)

구분	2012	2013	2015	2017
노령연금	869	869	982	1202
분할연금	7.3 (0.8)	8.6 (1.0)	13.0 (1.3)	22.4 (1.9)

주: 괄호 안은 노령연금 대비 분할연금 비율임
 자료: 국민연금 연구원 홈페이지

1. 여성관련 연금정책 현황 - 사적연금

- 우리나라의 여성관련 사적연금 정책은 **판례를 통해 퇴직금 및 개인연금에 대한 분할 사례가 있음**
 - 우리나라의 사적연금은 공적연금과 달리 분할연금 관련 규정이 없고 판례를 통해 지급 가능
 - 퇴직금과 개인연금의 경우 판례를 통해 분할연금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퇴직연금의 판례는 미존재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분할연금 관련 규정 및 판례

구분	판례사례	주요 내용	관련 규정
퇴직금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당시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인정 필요 • 이혼 시 회사에 근무중인 경우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불확실하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지 않으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데 참작가능 사유에 해당 	미존재
퇴직연금	미존재	-	
개인연금	존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보험 : 해약환급금 예상액 산정 후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킬 필요성 존재 	

2.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

- 여성의 고령화, 경제상황 및 노후준비 정도를 고려하여 우리나라 여성관련 연금정책을 평가하면,
 - (①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미흡) 성별 소득격차는 성별 연금급여 격차를 초래
 - *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고 이로 인해 연금가입률이 낮아 노후소득보장이 취약할 우려
 - (②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미반영) 출산, 육아 등으로 경제활동 및 연금가입 기회 상실
 - (③ 취약계층 보호(소득재분배 등) 기능 취약) 공적연금에만 일부 존재하고 사적연금에는 없음

우리나라 연금정책의 한계 및 문제점

연금정책의 주요 기능	공적연금	사적연금
노동시장에 대한 보완 기능	일부 존재 (출산크레딧)	없음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	없음	없음
소득재분배 등 취약계층 보호 기능	존재	없음

III. 해외의 여성관련 연금정책 사례

1. 공적연금 부문
2. 사적연금 부문
3. 시사점

1. 공적연금 부문

•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에는 기초연금과 여성관련 연금제도가 존재

- 기초연금 : 보편적 연금수급권 제공

- 여성관련 연금제도 : 배우자연금(spouse pension or widows' pension), 유족연금(survivors' pension), 분할연금, 육아·출산 크레딧

선진국의 여성 관련 공적연금제도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분할연금	육아크레딧	출산크레딧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우리나라 : 부양가족연금	모든 국가	대다수 국가 도입	일본, 유럽 대다수 국가 (우리나라 無)	대다수 국가 도입

1. 공적연금 부문 - 배우자연금, 유족연금

- **(배우자연금) 가사노동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여성배우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
 - 우리나라의 부양가족연금과 취지는 유사하지만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음
 - 국가마다 운영방식 다양(미국: 배우자가 62세 이상이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일정비율의 가산연금 지급)

- **(유족연금) 피보험자의 피부양가족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연금 수급 (대표적인 유족은 배우자)**
 - 국가마다 수급조건이 다르고 급여수준 다양
 - * 미국: 혼인기간 최소 9개월, 급여수준은 노령연금액의 100%(조기수급 시 71.5%~99%, 재혼 시 중단)
 - * 독일: 혼인기간 최소 1년(최소 5년 납부), 유족배우자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면 급여액은 40%까지 감소
 - * 스웨덴: 최소 3년 동안 소득활동, 급여수준은 50세~64세이거나 17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유족배우자는 기본급여액(base amount)의 90% 수령(유족 배우자가 50세 이하인 경우 매년 6.7% 감액)
 - European Parliament(2016)에 따르면, 유족연금 수급자 중 여성 비중은 82% (2013년 기준)
 - * 주요국 노령연금수급자 중 여성비율은 52.6% (2013년 기준)

1. 공적연금 부문 - 분할연금

• 캐나다(CPP, 1978년 분할연금 시행)

- 이혼 시 결혼기간에 비례하여 연금액을 균분 (1987년부터 **별거 시에도** 적용)
- 이혼 및 별거 아닌 **동거(결혼 또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 시에도 분할 가능

• 스위스(1997년부터 분할연금 시행)

- 결혼기간 동안 발생한 연금액을 무조건 반분

• 독일(1977년부터 분할연금 시행)

- 이혼 시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각자 취득한 연금가입 이력을 균등하게 분할
- 2001년 연금 개혁으로 **혼인관계 유지 시에도** 연금 분할 가능

• 영국 :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운영

- 연금액에 상당하는 가치의 **부동산이나 현금 등으로 대체**하여 받거나(Offsetting)
- **법관의 명령에** 의해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우자에게 지급하거나(Earmarking),
- 법관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권에 대해 **분할비율을 결정**(Sharing)

1. 공적연금 부문 - 출산 및 육아 크레딧

- (출산 및 육아크레딧) 출산, 육아, 수발, 돌봄 크레딧 등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연금(부가적 성격)
 -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 출산율 기능 포함(OECD(2017))
 - 주요 선진국 들은 여성의 노후빈곤 완화와 연금수급권 확대를 위해 출산 및 육아 크레딧을 도입
 - (도입 배경) 연금개혁 과정 중 남성에 비해 여성 연금수급권 약화 → 여성관련 연금수급권 강화정책 시행
 - (정책효과) 크레딧의 여성 노후소득보장 효과* 존재
- *De Freitas et al.(2011): 연금크레딧제도는 EU 국가에서 5년의 경력중단에 의해 발생하는 노후소득보장 감소효과를 거의 상쇄
 Brugiavini et al.(2012): 연금정책이 자녀 양육으로 근로하지 못하여 발생한 소득의 손실을 상쇄

주요국의 출산 및 육아 크레딧 운영 현황

크레딧 형태	출산 크레딧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후생연금) 등
	육아(양육) 크레딧	캐나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영국, 일본(후생연금) 등
	수발(돌봄) 크레딧	독일, 오스트리아 등
	장애아동 돌봄 크레딧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포르투갈 등

자료: 유호선(2016) 재구성

1. 공적연금 부문 - 출산 및 육아 크레딧

- (스웨덴의 육아크레딧) 자녀양육으로 인한 소득상실에 대한 보상 및 출산율 제고를 목적으로 1998년 도입
 - 수급 조건 : 친부모 혹은 입양 부모이어야 하고, **최소 5년 동안 소득활동**을 하였거나 장애연금 수급자
 - * Palme(2000)에 의하면 양육크레딧은 스웨덴 여성이 양육으로 인해 **고용단절**이 발생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약 **10% 정도 연금수준을 증가시키게** 될 것으로 봄(박진화, 2015)

- (독일의 양육크레딧/출산크레딧) 1986년 도입, 1992년 자녀 당 1년의 **양육크레딧을 3년으로 확대**
 - 자녀 1인당 월 26~28유로의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국민연금연구원, 2018)

- (영국) 아동 양육크레딧, **돌봄크레딧**, 모성 및 입양급여 크레딧 등 다양
 - 아동 양육크레딧 : 아동양육으로 인해 소득이 상실된 기간에 대해 보상
 - 돌봄크레딧 :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에 따른 소득의 감소 혹은 상실된 기간에 대해 보상
 - 모성 및 입양급여 크레딧 : 자녀의 출산 및 입양으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 혹은 감소된 기간에 대해 보상

- (일본) 후생연금에서 육아휴직기간의 **보험료 면제, 보험료 감액** 등 여성에 대한 제도적 배려 존재
 - 육아로 휴직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면제(가입자와 사업주 모두)하며, 동 제도의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

2. 사적연금 부문 - 배우자연금

-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 저소득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사적연금제도 운영
 - 근로활동을 하는 배우자(男)가 비근로활동 배우자(女) 명의의 개인퇴직계좌에 **보험료를 대납**
 - 미국 Spousal IRA, 캐나다 Spousal RRSPs, 호주 Spouse Contributions
- 최대 납입한도액*이 설정되어 있으며, **보험료 납입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
 - * 미국 : \$5,500, 캐나다 : 급여의 18% 또는 \$26,230 중 작은 금액, 호주 : \$3,000

배우자 대상 사적연금 운영 사례

국가	제도명	가입대상	세제혜택
미국	Spousal IRA	저소득 배우자, 무직 배우자, 동거인	보험료 납입자 (남편)에 대한 소득공제
캐나다	Spousal RRSPs		
호주	Spouse Contribution		

기여금 납입한도 변화 (미국, 캐나다)

< 미국 개인형퇴직연금의 기여금 납입한도 >

(단위: USD)

구분	74~76	77~81	82~97	98~01	02~05	06~07	08~12	13~18
전통형 IRA	1,500	1,500	2,000	2,000	3,000	4,000	5,000	5,500
배우자 IRA	-	250	250	2,000	3,000	4,000	5,000	5,500
추가기여	-	-	-	-	500	1,000	1,000	1,000

자료: DQYDJ(2017)

< 캐나다 개인연금(RRSP)의 최대납입 한도액 >

(단위: CAD)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납입액	22,450	22,970	23,820	24,270	24,930	25,370	26,010	26,230

자료: Royal Bank

2. 사적연금 부문 - 전업주부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 일본은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전업주부 가입 허용** : 개인형 DC연금제도의 가입대상 범위 확대
 - 2016년 5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2017년 1월부터 전업주부도 가입이 가능(월 최대 23,000엔)
- 미국, 캐나다와는 달리 전업주부 명의의 개인형 DC연금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혜택 미적용**
 - 다만, 적립금 운용으로 얻은 **이자와 배당금 등은 전액 비과세**, 급여수령단계에서 **연금수령 시 소득공제**
 - 60세까지 중도 해약 및 인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

일본 개인형 DC연금제도의 가입대상



자료: 大和総研(2017.10.5), 個人型確定拠出年金 (iDeCo) の加入状況

2. 사적연금 부문 - 분할연금제도

- 미국, 독일, 영국, 캐나다 등은 이혼 여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사적연금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봄**
- **미국** : 적격가사관계명령(QDRO) 도입을 통해 퇴직연금에 대한 연금분할이 가능해짐
 - ERISA 법은 퇴직연금에 대한 양도금지규정을 두고 있어 이혼 시 퇴직연금제도 분할 청구가 불가능하나,
 - **근로자퇴직평등법 제정으로** 적격가사관계명령에 해당하면 ERISA법의 연금수급권 양도금지규정에 대한 **예외로 인정**
- **영국** : 연금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권과의 분할** 또는 연금분할명령을 통한 직접적인 연금지급 가능
- **독일** : 1977년 부터 시행되었으며, 2009년 일부 법률 개정을 통해 확대 시행
 - 이혼당시 급여산식에 따라 급여액을 산정하고, **혼인기간이 차지하는 부분에 대해 동등하게** 나누는 방식 채택
 - 연금분할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이혼 후 계속하여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실질적 분할은 연금지급 개시 시점**임
- **캐나다** : 퇴직연금의 경우 별도 규정없이 가족법(Family Law Act) 상 **재산분할**에 따라 이루어짐
 - 분할금액 결정시 연금의 종류 및 금액, 산정기간, 지급시기, 가치평가 방식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짐

2. 사적연금 부문 - 유족연금 비과세

- 영국 : 사적연금에서 형성된 **유족연금소득에 대해 비과세**
 - 75세 이전 사망 시 무조건 비과세: 급여수령형태(연금 혹은 일시금)와 관계없이 비과세
- 호주 : 유족일시금은 연령에 관계없이, 유족연금은 **유족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비과세**
 - (연금 선택) 유족 또는 사망자 연령이 60세 이상인 경우 미과세된 요소를 제외하고 비과세
 - (일시금 선택) 세법상 유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소득원천에 관계없이 비과세

퇴직연금 유족연금 선택 시 세제적용

구분	급여원천	세제적용
사망자 또는 유족이 60세 이상	비과세 부분	비과세
	과세부분 (Taxed Elt.)	비과세
	과세부분 (Untaxed Elt.)	한계세율 - 10% 세액공제
사망자 또는 유족 모두 60세 미만	비과세 부분	비과세
	과세부분 (Taxed Elt.)	한계세율 - 10% 세액공제
	과세부분 (Untaxed Elt.)	한계세율 적용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퇴직연금 유족일시금 선택 시 세제적용

구분	급여원천	세제적용
비과세 부분	비과세	비과세
과세부분 - Taxed Element	비과세	15% (의료세 포함)
과세부분 - Untaxed Element	비과세	30% (의료세 포함)

자료: Australian Taxation Office

2. 사적연금 부문 - 출산지원금 및 재정지원

- 칠레는 2008년에 성(Gender)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다양한 조치를 시행
- (출산지원금) **출산 또는 입양 시** 여성의 연금계좌에 **추가금액***을 납입해주며, **65세 이후 인출가능**
 - * 최저임금 18개월 분 + α (자녀출생시점 부터 연금수급시점 까지의 평균수익률)
- (기타) 이혼 시 분할연금,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남·여 계약 분리, 여성에 대한 **보험료지원** 등을 시행

2008년 칠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

정책 목표	개혁방안	주요 내용
성 형평성 제고 (Gender Equity)	출산지원금	최저임금에 기초하여 자녀수에 따라 18개월의 가입기간 인정
	이혼 시 연금 분할	혼인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前 배우자 연금액 50% 지급
	남·여 형평성 제고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에 대한 남·여 계약 분리
적용범위 및 적정성	여성에 대한 추가지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대한 보험료 조정 후 차액을 지원

자료: Rafael Refman et al.(2008) 내용 재구성

3. 시사점

공적 연금

- 연금개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별 연금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 정책 추진
 - * 유족연금, 분할연금 등 현행 제도 개선 등
- 공적부문의 최저보장기능(기초연금) 강화, 민영화 유도(칠레 출산지원금을 사적연금에 적용)
- 독립적 연금수급권과 함께 파생적 연금수급권 보장 중요시(출산·육아 등 근로여건 한계 고려)

사적 연금

- **전업주부(여성) 대상 별도의 사적연금 운영(소득공제)**으로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 * 일본 : 전업주부 등에게도 퇴직연금 가입을 허용하여 **사적연금의 가입 선택폭을 확대**
- 미국 등은 이혼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분할연금을 사적연금제도까지 확대** 운용
- **유족연금에 대한 비과세** 적용으로 유족들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
- 칠레는 **출산지원금을 퇴직연금에** 적립하여 여성의 노후소득 강화(65세 이후 인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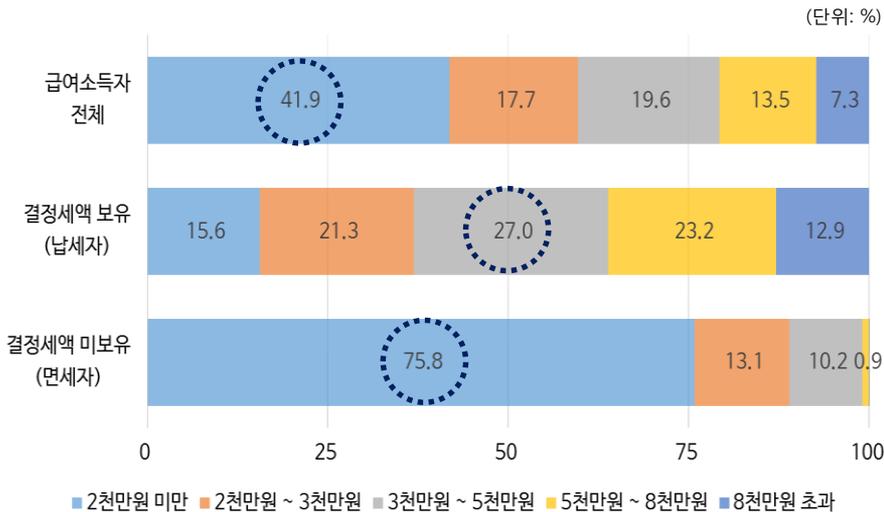
IV. 여성관련 연금정책 효과 및 개선 방향

1.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시뮬레이션 효과
2. 여성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1.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시뮬레이션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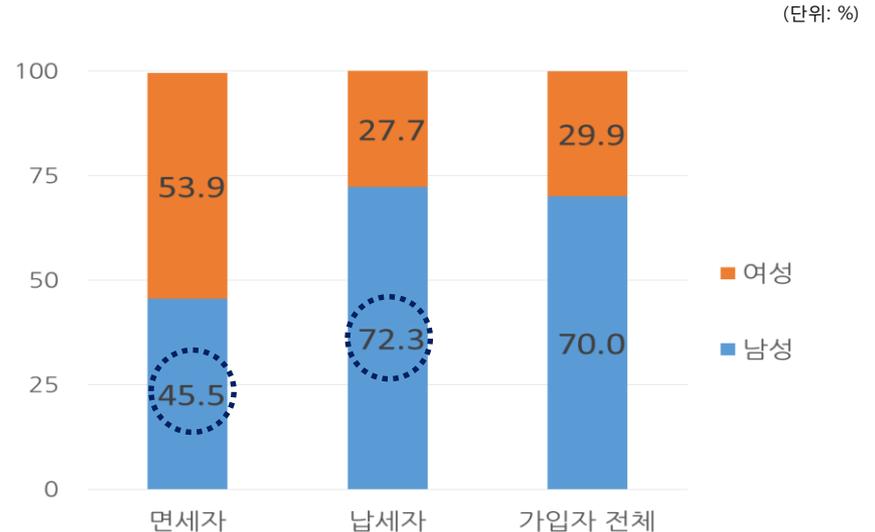
- (납세자 현황) 급여소득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자(납세자)는 전체의 56.4%
 - 전체 급여소득자 중 2천 만원 이하는 41.9%(납세자 3~5천만 원 27.0%, 면세자 2천만 원 이하 75.8%)
- (연금저축 가입자) 연금저축 가입자 중 91.7%가 납세자(=2,101/2,292), 8.3%는 면세자
- (성별연금저축 가입) 납세 및 면세가입자의 남성 비중은 각각 72.3%, 45.5% (전체 70%가 남성)

급여구간별 연금저축 가입 및 급여소득자 현황



자료: 국세청(2017), 2017 국세통계연보 활용

납세여부별 성별 연금저축 가입자 현황



자료: 국세청(2017), 2017 국세통계연보 활용

1.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시뮬레이션 효과

주요가정 및 분석 방법



• 남성 : 소득활동자

• 여성 : 무소득 전업주부

• 무소득 여성 : IRP제도 가입
(남성배우자 보험료 부담)

* 납세자 21%, 면세자 2.5% 가입

• 납입액 : 국세통계연보

소득계층별 평균납입액('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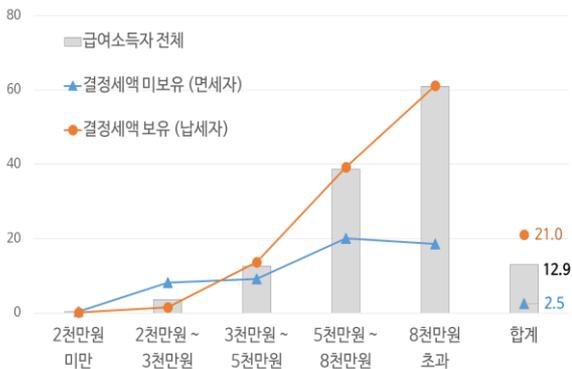
* 납입액: 24만원 ~ 313만원

• 세액공제 : 현 연금세제체계 준용

*총급여 5500만원 이상 12%, 미만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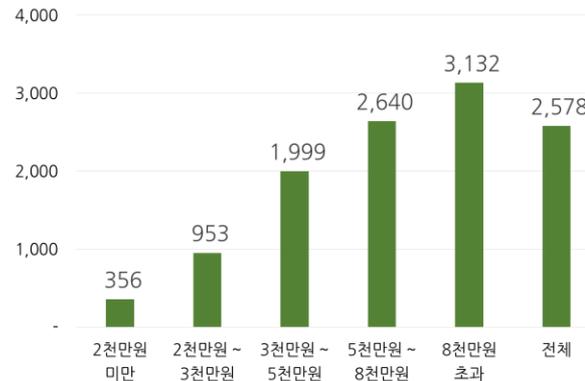
→ 세액공제액 연금계좌로 적립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률



자료: 국세청(2017), 2017 국세통계연보 활용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납입액



자료: 국세청(2017), 2017 국세통계연보 활용



• 연금소득 개선효과

= 세액공제액 / 보험료 납입액

• 정부 재정지출 소요액

= 제도가입자 × 세액공제액

1.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시뮬레이션 효과

(1)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 : 분석 결과1

• 세액공제만 허용 시 효과 : 면세자 제외 효과

- (원칙) 현행 납세액범위 내에 연금저축 납부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은 동일(전업주부 납부액 포함)

* 추가대상자 최대규모 1,151천명 : 납세자이면서 가입자인 2,101천명에 남성이구주 비율(70%)과 유배우자 비율(78.3%)을 적용

-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는 12.6% →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2,699천원,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40천원

- 재정지출효과는 연간 3,910억원(대상 배우자가 모두 가입 시) → 대상 배우자의 50% 가입 시 연간 1,960억원

연금소득 개선효과



재정지출 효과



1.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시뮬레이션 효과

(1) 배우자 기여분에 대한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 : 분석 결과2

• 환급형 세액공제 허용 시 효과 : 면세자 포함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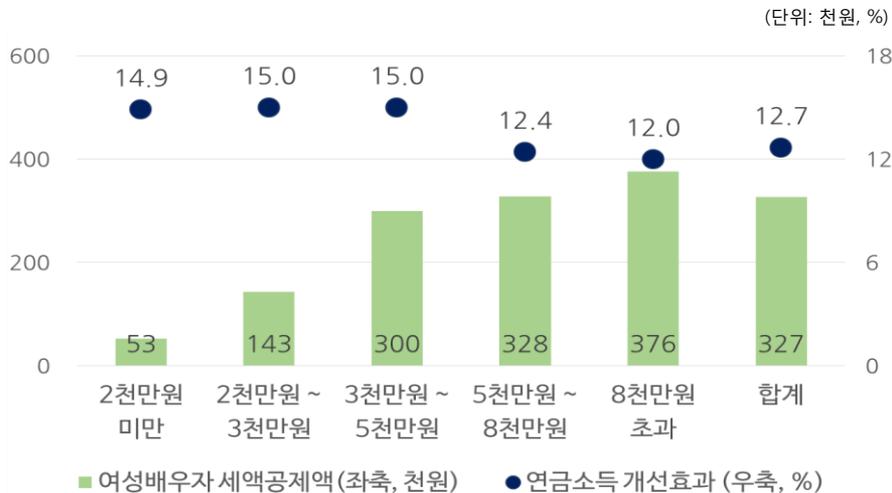
- (원칙) 전업주부의 납부액이 세액공제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수준만큼 환급해주는 세액공제 방식

* 추가대상자 최대규모 1,256천명 : 전체가입자인 2,292천명에 남성이구주 비율(70%)과 이들의 유배우자 비율(78.3%)을 적용

- 연금소득개선효과(세액공제/납부액)는 12.7% → 전업주부의 연평균 납부액은 2,578천원, 연평균 세액공제액은 327천원

- 재정지출효과는 연간 4,110억원(대상 배우자가 모두 가입 시) → 대상 배우자의 50% 가입 시 연간 2,050억원

연금소득 개선효과



재정지출 효과



1.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의 시뮬레이션 효과

(2)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한 비과세 허용 시 효과

• 퇴직소득 과세표준액 구간별 상속세 추정

- (원칙) 퇴직연금 수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여성 배우자가 수급할 유족연금에 대해 비과세
 - 연금소득개선효과 : 퇴직급여의 유족연금 분에 면세하게 될 경우 연간 87만원의 가처분 소득 증가 (소득대체율 3.6%개선)
 - 재정지출효과 : 조세지출은 2조 2천 750억원
- *조세지출 수준이 상당하므로 정책추진 시 일정 소득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

(단위: 천 명, 십억 원, 천원, %)

구분	퇴직자 인원	퇴직급여총액	퇴직소득공제	과세표준	상속세 (추정액)
1천만 원 이하	2,354 <90.4>	12,389 (5,262)	12,706 (5,397)	5,874 (2,495)	587 (250)
1천 ~ 3천만 원	155 <6.0>	4,878 (31,387)	3,283 (21,125)	2,628 (16,911)	263 (1,691)
3천 ~ 6천만 원 이하	41 <1.6>	2,968 (72,842)	1,889 (46,376)	1,720 (42,213)	172 (4,221)
6천만 원 ~ 1억 이하	25 <0.9>	2,780 (113,257)	1,815 (73,943)	1,807 (73,624)	181 (7,362)
1억 ~ 5억 이하	28 <1.1>	7,225 (256,681)	3,930 (139,615)	4,585 (162,888)	917 (32,578)
5억 ~ 10억 이하	0.34 <0.013>	338 (996,355)	154 (454,673)	223 (656,645)	67 (196,994)
10억 초과	0.12 <0.005>	364 (3,006,200)	147 (1,216,000)	221 (1,823,923)	88 (729,569)
합계	2,604 <100.0>	30,941 (11,884)	23,925 (9,189)	17,058 (6,552)	2,275 (874)

주: 1) () 안은 1인당 수준(천원)임 2) < > 안은 구성비

2. 여성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기본 방향

-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입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노동시장 여건 개선 : 기여성 원칙고려
→ 워라밸 취지 고려, 경력단절기간에 대한 실업급여 및 사내복지기금 활용 등을 고려한 정책개선
- 선진국에서 추진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의 여성정책 수준까지는 맞출 필요
→ 선진국의 지속적인 여성 관련 공적연금 개선에도 여전히 여성의 노후소득보장 수준이 낮으며, 우리나라의 고령화 및 제반 환경의 성별 격차를 고려 시 공적연금 역할 + 사적연금 확대 필요

사적 연금 정책 개선

-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등 여성의 연금수급권 강화
- 분할연금, 부부연생연금의 제도화 및 종신연금화 유도
-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 세계혜택 및 보조금 강화 정책 시행

2. 여성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

① 전업주부에 대한 IRP 가입 허용 등 여성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

- (사회·경제환경 고려) 노동시장, 가족구성 및 부양인식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퇴직연금 가입범위가 확대될 필요
- (국제화 고려) 미국, 캐나다와 같이 배우자 IRP의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거나
일본과 같이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지 않지만 가입대상에 포함

② 분할연금, 부부연생연금의 제도화 및 종신연금화 유도

- 미국, 독일처럼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이 제도화될 필요
-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이 분할연금 및 부부연생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 * 특히, 종신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급여수준을 높여줄 수 있도록 제도화
 - * 관련 재원은 일시금 수령에 따른 퇴직소득세(또는 기타소득세)를 강화하여 그 납세액으로 충당

2. 여성관련 연금정책 개선 방향

• 여성관련 사적연금정책 개선 방향

③ 세제혜택 및 보조금 강화 정책

- 배우자 기여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유족연금 급여액에 대한 비과세 허용

* 경제적 효과분석에서는 현재의 남성 가입자의 배우자만 가입 대상으로 가정

* 노후자산으로서의 연금가치에 대한 인식개선 수반 시 미가입 남성 및 여성배우자로 추가 확대 가능성

- 여성관련 IRP(개인연금 포함) 상품 개발 시 현행 세제혜택을 확대 : 세제적격(보조금 포함) 및 세제비적격 등

* 기타 : 퇴직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개시 연령 조정

- 퇴직연금 수급개시연령을 55세에서 정년 의무화 연령인 60세 이후로 설정하여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활용

- 수급개시연령이 65세 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유사하게 설정 → 종합적 공사연금제도 설계

감사합니다